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15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이학영·송갑석·박홍근

김경만 • 앙이원영 • 아수진비

주철현 • 박 정 • 김승원

김교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고, 75세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그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를 7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참전유공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연령 제한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있음.

이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의 연 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 료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75세"를 "65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료지원) ① (생 략)	제7조(의료지원) ① (현행과 같
	승)
② 국가는 <u>75세</u> 이상인 참전유	② <u>65세</u>
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	
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	
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	
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